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34호의2 서식]

일·기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금(일생활균형 시스템) 지급 신청 결과 통지서

신청서 접수번호

사업주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법인명)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주소		
	담당자 전화번호	담당자 FAX번호	담당자 이메일주소	

계획내용	시스템 지원금 계획액	00원	시스템 지원금 승인액	00원
	소규모기업 우대사항 신청 여부 []예 []아니오			

승인내용

신청구분		총 지급 결정액 []선금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시스템 활용 목적 <input type="checkbox"/> 유연근무 <input type="checkbox"/> 근로시간 단축 <input type="checkbox"/> 시간 단위 연차 <input type="checkbox"/> 기타 모성보호·일가정양립 제도	소규모기업 우대사항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원	

부지급 또는 일부지급 사유

지급계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 및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심사 결과를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직인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
------	-----	----

안내사항

- 위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제1호의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 없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